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75
----------	-------

발의연월일 : 2026. 3. 11.

발 의 자 : 박정하 · 정성국 · 조정훈
김성원 · 이양수 · 우재준
김은혜 · 엄태영 · 한지아
안철수 · 김태호 · 서범수
의원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드라마·예능 등 영상콘텐츠의 유통과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콘텐츠 제작이 대형화·고도화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제작규모가 확대되고 참여 주체와 계약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음. 이에 외주·하도급 구조의 다단계화, 스태프·창작자에 대한 대가 지급 지연, 정산 기준의 불투명, 계약서 미교부 및 계약조건의 사후 변경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콘텐츠제작 계약 체결 시 계약서 교부, 필수 기재사항의 명시, 수익배분 내역 제공 및 기한 준수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규정함으

로써 콘텐츠 제작 생태계의 공정성과 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콘텐츠제작 관련 계약) ① 콘텐츠제작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 · 갱신 ·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 · 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계약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과 그 내역 및 기한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③ 콘텐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2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사업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4조의2(콘텐츠제작 관련 계약)</u> <u>① 콘텐츠제작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u> <u>1. 계약 금액</u> <u>2. 계약 기간 · 갱신 ·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u> <u>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u> <u>4. 업무 · 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계약의 범위에 관한 사항</u> <u>5. 수익의 배분과 그 내역 및 기한에 관한 사항</u> <u>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u> <u>③ 콘텐츠사업자는 제2항에 따</u>

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2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사업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